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55
----------	-------

발의연월일 : 2020. 1. 2.

발의자 : 윤관석 · 강훈식 · 김철민

안호영 · 박재호 · 김정우

박광온 · 이후삼 · 이상현

박정 · 노웅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명칭에 포함된 ‘시설’ 부문이 강조되어 국가철도망 구축이라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하여 명칭의 혼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공단의 주요 기능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등).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⑦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를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한국철도시설공단법</u>	<u>국가철도공단법</u>
<p>제1조(목적) 이 법은 <u>한국철도시설공단</u>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법인격) <u>한국철도시설공단</u>(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p> <p>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u>한국철도시설공단</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1조(목적) ----- <u>국가철도공단</u>-----</p> <p>-----</p> <p>-----</p> <p>-----</p> <p>-----</p> <p>-----</p> <p>-----.</p> <p>제3조(법인격) <u>국가철도공단</u>-----</p> <p>-----</p> <p>-----.</p> <p>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p> <p>--- <u>국가철도공단</u>-----</p> <p>-----</p> <p>---</p>